

입소계약 에 관한사항(계약기간/계약목적/ 기타비용부담액/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계약의 해제등 에 관한사항)

제30조(입소계약의 목적)

입소계약은 효나눔요양원(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 간에 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31조(입소계약 체결 대상)

1. 입소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신원인수인을 포함하여 체결한다.
2. 신원인수인이란 수급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 부담 및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3. 수급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이 계약을 대리 체결할 수 있다.

제32조(계약 기간)

1. 입소계약의 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은 갱신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 갱신 시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제33조(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1. 2026년 기준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서비스 제공 일수 및 수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간식비
 - 상급 침실 사용료(해당 시)
 - 기타 보호자 요청에 따른 추가 서비스 비용
4. 이용료 및 비급여 비용은 계약 시 상세히 안내하며, 변경 시 사전 고지한다.

제3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수급자의 서비스 내용 및 제공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2. 계약 내용 및 비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서비스 개선 및 고충을 제기할 권리
4. 계약 해지 및 변경을 요청할 권리

제35조(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따른 이용료 및 비용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병력, 투약 정보 등을 정확히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상태 변화 시 기관과 협조할 의무
4. 기관의 운영규정 및 서비스 이용 수칙을 준수할 의무

제36조(계약 내용의 변경)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장기요양등급 또는 인정기간 변경
 - 서비스 내용 또는 제공 범위 변경
 - 이용료 또는 비급여 비용 변경
2. 계약 변경 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사전 설명 후 동의를 받는다.
3. 변경 내용은 계약서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및 종료)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 종료 또는 자격 상실 시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료 장기 미납
 - 계약 내용 중대한 위반
 - 안전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38조(계약 종료 후 조치)

1. 계약 종료 시 정산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정리한다.

2. 수급자의 개인 물품은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3. 계약 관련 서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한다.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제39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은 관계 법령,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동, 최저임금 인상, 물가 변동, 기관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이용료 변경 대상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비급여 비용(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 사용료 등)
 - 기타 보호자 요청에 따른 추가 서비스 비용
3.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은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검토·확정한다.
4. 변경 내용은 시행일 최소 30일 이전에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서면, 문자, 카카오톡, 공지문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고지한다.
5. 변경 고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안내한다.
 - 변경 사유
 - 변경 전·후 비용 비교 내역
 - 변경 적용일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에 대해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
7. 동의 내용은 서면 확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보관
8. 이용료 환불 및 정산 기준(중도퇴소, 사망, 입원 시 환불 기준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제40조(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1. 효나눔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 상태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는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제공하며, 수급자의 존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차별 없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41조(제공 서비스의 내용)

효나눔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 구강관리, 목욕, 옷 갈아입기
 -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식사 도움, 배설 도움
 2. 인지·정서 지원 서비스
 - 말벗, 정서적 지지
 - 인지 자극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3. 간호 및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 상태 관찰, 투약 관리
 - 감염 예방 관리, 의료기관 연계
 4. 일상생활 및 환경 관리 서비스
 - 침실 및 공용 공간 청결 유지
 - 안전한 생활 환경 관리
 5. 기타 서비스
- 보호자 상담
필요 시 외부 자원 연계

제42조(서비스 제공 기준)

1.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제공계획에 따른다.
2. 수급자의 상태 변화 시 급여제공계획을 재수립하여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3. 모든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관리한다.

제43조(서비스 비용 부담 원칙)

1. 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수가 기준에 따른다.
2.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3.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제공 일수, 수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44조(비급여 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간식비
- 상급 침실 사용료(해당 시)
- 기타 보호자 요청에 따른 추가 서비스 비용

※ 비급여 비용의 세부 금액은 계약 시 별도로 안내한다.

제45조(비용 안내 및 고지)

1. 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 사항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2. 비용 변경 시에는 제39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절차)에 따른다.
3. 모든 비용 관련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보관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사항.

제46조(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정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중증 질환, 치매 악화 등으로 상시 관찰이 필요한 경우
- 낙상 위험, 배회, 공격성 등으로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 경우
- 욕창, 도뇨관, 비위관 등 집중적인 간호 관리가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등으로 격리 또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기관장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7조(특별 보호 대상자 선정 및 절차)

1. 특별 보호 대상자는 간호인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관찰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한다.
2. 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의 건강 상태, 안전 위험도, 보호자 의견을 함께 고려한다.
3. 특별 보호 필요 여부 및 제공 계획은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4. 관련 내용은 기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48조(특별 보호 서비스 제공 기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집중 관찰 및 안전 관리 강화

- 수시 상태 확인
- 낙상 예방 환경 조성 및 보조기 사용 지도
- 2. 개별 맞춤 돌봄 제공
 -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맞춤형 신체·인지·정서 지원
 -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조정
- 3. 간호 및 건강 관리 강화
 - 활력징후 측정, 투약 관리
 - 욕창·도뇨관·비위관 등 간호 관리 강화
- 4. 위기 상황 대응
 -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의료기관 연계
 - 보호자에게 상황 공유

제49조(특별 보호 서비스 비용 부담)

1. 특별 보호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는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비용으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할 수 있다.
 - 보호자 요청에 따른 추가 간병 또는 특별 관리
 - 비급여 간호 소모품 사용
 - 기타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
3. 비급여 비용 발생 시 사전에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제공한다.

제50조(특별 보호 종료 및 사후 관리)

1.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특별 보호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일반 서비스 기준으로 전환한다.
2. 전환 여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한다.
3. 특별 보호 제공 과정 및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사후 관리에 활용한다.